대한의사협회 회비 및 납부 방법 안내

대한의사협회는

-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을 대표하며, 회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의 의사단체입니다.

의협 회비의 사용처

- 회원님께서 납부하시는 회비는 의권 및 회원권익옹호, 그리고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쓰여집니다.

회비 납부 여부 확인

- 회비를 납부코자 하거나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회원님은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로그인 후 좌측 상단 "회원정보관리"를 클릭하시면 본인의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회비가 있을 경우 붉은 색으로 해당 연도가 별도 표시 됩니다. (예 : 2017년이 미납인 경우 "17"으로 표시)
- 시도 또는 시군구의사회를 통해 회비를 납부하셨다면 협회 회비납부 DB 반영 시까지는 일정기간(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회비납부 의무

- 현행 의료법은 의사는 의협에 당연히 가입됨을 그리고, 의협의 정관을 지켜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8조 제3항)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 대한의사협회 정관은 회비 납부를 회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6조의 2)
  "① 회원은 의사의 윤리와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및 분담금, 특별회비 등을 소속 지부 및 분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부에 등록할 수 없는 회원은 협회에 직접 납부 할 수 있다"

회비 납부 절차

- 의협 회비를 납부코자 하시는 회원님들은 아래의 소속 시도의사회나 시군구의사회 사무처를 통해 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부에 등록할 수 없는 회원님 제외)

No	구분	전화번호	FAX
1	서울특별시의사회	02-2676-9751	02-2679-7877
2	부산광역시의사회	051-464-5571	051-465-5576
3	대구광역시의사회	053-953-0033	053-956-3273
4	인천광역시의사회	032-425-8767	032-425-8764
5	광주광역시시의사회	062-529-2101	062-529-8700
6	대전광역시의사회	042-252-9917	042-256-1244
7	울산광역시의사회	052-243-2047	052-245-3594
8	경기도의사회	031-255-1397	031-244-4339
9	강원도의사회	033-254-3329	033-241-9015
10	충청북도의사회	043-256-5260	043-258-4901
11	충청남도의사회	041-531-9916	041-532-9919
12	전라북도의사회	063-284-5070	063-286-9281
13	전라남도의사회	061-727-2451	061-727-2431
14	경상북도의사회	053-941-7785	053-941-5557
15	경상남도의사회	055-240-6223	055-240-6225
16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064-757-4640	064-757-4590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 협회 회원으로서의 받으셔야 하는 권리에 제한이 따릅니다.
  - 협회 이사 및 대의원 자격 제한
  - 협회 및 산하 위원회 참여 제한
  - 사이버 연수교육 제한
  - 협회 연구용역 참여 제한
  - 의협신문 및 협회지 구독 제한
  - 기타 협회 회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 제한
-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개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KMA 대한의사협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의협 회비 직납 안내

협회 정관 제6조의2(회원의 의무) 제4항에 의거 지부에 등록할 수 없는 회원은
협회에 회비를 직접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회비 직납 대상 회원(정관세칙 제3,4조)

①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

② 군의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회원(군복무회원 등)

③ 기타 사유로 지부를 정할 수 없는 회원

회비 직납 절차 및 방법

① 협회 경영지원국 재무팀(T 02-6350-6521)으로 연락하셔서 계좌번호 및 납부금액을 확인합니다.
※ 입금전,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안내받은 계좌로 회비를 송금합니다.
※ 회비 송금시 반드시 납부회원의 면허번호와 존함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Ex : 12345홍길동)

④ 추후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회원정보관리 메뉴에서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납은 해당년도가 붉은 색으로 표시됩니다.

KMA 대한의사협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연도별 회비 현황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징수액 및 분담금,
특별회비의 징수 여부와 징수액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합니다.

회원 종별 구분(회비 등의 부담률에 관한 규정 제4조)

가군 : 개업회원
나군 : 봉직회원
다군 : 인턴, 레지던트, 무급조교, 휴직회원, 소령급 이상 군의관
라군 : 대위급 이하 군의관, 공중보건의

연도별 회비 기준액

단위 : 원

군별 / 연도별	가군	나군	다군	라군	입회비
2011	300,000	221,000	125,000	96,000	100,000
2012	300,000	221,000	125,000	96,000	100,000
2013	310,000	231,000	135,000	106,000	100,000
2014	330,000	251,000	145,000	116,000	100,000
2015	330,000	251,000	145,000	116,000	100,000
2016	330,000	251,000	145,000	116,000	100,000
2017	370,000	291,000	170,000	141,000	100,000
2018	390,000	311,000	185,000	156,000	100,000

※ 2013년 악법대책기금 1만원 부과
※ 2014년, 2015년 한방대책특별기금 각 1만원 부과
※ 2014년, 2015년 투쟁회비 부과(가·나 2만원, 다·라 1만원)
※ 2015년 이전 중령(나회원), 소령·대위(다회원) 적용,
2016년부터 소령급이상(다회원), 대위급 이하(라회원) 적용
※ 2017년 투쟁회비 명칭이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로 변경되면서 감액조정(가·나 1만원, 다·라 5천원)
회관신축기금 신설(가·나 5만원, 다·라 3만원)
※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 명칭은 "투쟁회비"로 재변경, 3만원(가·나), 2만원(다·라) 금액인상**
만 70세 이상 회원 회비면제, 개원회원 중 만 65세 이상 '나'회원 회비 적용(제70차 총회 환원 의결)

KMA 대한의사협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